【 붙임 】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

○ 제안사유

- 현행 법령에서 재난정보의 송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정보를 받는 수신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

⇒ **재난정보를 받는 수신기에 대하여 정보 표시를 의무화 필요**

○ 주요내용

- **수신기의 재난정보 화면표출 의무규정 신설**(안 제38조3항 후단 신설)

· **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재난정보를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출하도록 의무규정**(제조사 등)을 두려는 것임

《 신·구 조문 대비표 》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 시설의 우선 사용	제38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
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. 「방송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	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,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③ ----------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 사용자의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사항을 받는 수신기는 화면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○ 관련부처 및 사업자 의견수렴 반영 결과

- 법률 개정안은 '13. 1. 1부터 적용

《 수정안과 조정(안) 대비 》

개 정 안	조 정 안
제38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	제38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~② (개정 안과 같음)

2.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.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,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용자의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사항을 받는 수신기는 화면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, 수신기 제조업자는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 사항을 받는 사용자 수신기 화면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	**부 칙** 제1조(시행일) 이 법 제38조제3항 후단 신설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